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29

발의연월일: 2021. 12. 16.

발 의 자:이 영·조명희·한무경

ス성호·태영호·金炳旭

김정재 · 김승수 · 추경호

김용판 • 이명수 • 송언석

유경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 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상대방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즉각적인 행위자 억제를통한 추가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1조).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 2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③ 제2항에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